

의안번호	제 812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8년 4월 5일 (제 363 회)	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
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8년 4월 5일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12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8년 4월 5일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명칭변경

- 건설소방위원회 → 건설환경소방위원회(안 제3조, 제4조제2항)
- 바이오환경국 → 바이오산업국(안 제4조제2항)

나. 기구신설

- 환경산림국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건설소방위원회”를 “건설환경소방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“바이오환경국”을 “바이오산업국, 환경산림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상임위원회 설치)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5. <u>건설소방위원회</u> 7명 이내 6. (생략)	제3조(상임위원회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건설환경소방위원회</u> --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정책복지위원회 가. ~ 마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· 4. (생략) 5. <u>건설소방위원회</u> 가. 재난안전실, 균형건설국, <u>바이오환경국</u> ,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 라. (생략) 6. (생략) ③ (생략)	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<u>바.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</u> 3. ·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건설환경소방위원회</u> 가. ----- <u>바이오산업국, 환경산림국</u> ----- 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 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 (위원회의 설치)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57조 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8조 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제59조 (전문위원)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(이하 “전문위원“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,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를 한다.

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0조 (위원회에서의 방청 등) ①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61조 (위원회의 개회)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.

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2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